

## 行政區域境界調整에 관한 意見聽取

(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일부 →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편입)

### □ 청취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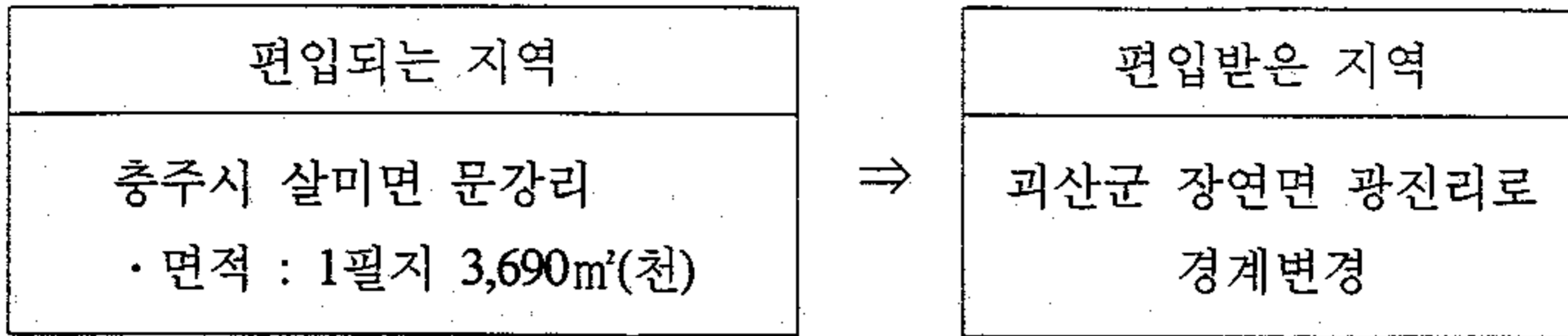
-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지구내 편입된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,690m<sup>2</sup>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편입하는 시·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는바
-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시·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의 의견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임

※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
### □ 구하고자하는 도의회 의견

경계조정 대상지역인 「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 천 3,690m<sup>2</sup>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편입」 하는데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

### □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



-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('97.10.16~'98. 5.30)에 따라 지구내 편입된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 천 3,690m<sup>2</sup>가 2개시군 (충주시, 괴산군)에 걸쳐 분할되어 환지청산, 소유권 이전 등 농지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
- 이해관련 주민(1명) 또한 괴산군 장연면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인정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음

### □ 도 의견

-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괴산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충주시 살미면의 하천부지(1필지 3,690m<sup>2</sup>)가 지구내 편입되어 환지과정에서 동일필지가 2개시군에 걸쳐게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
- 관련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시·군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인정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,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## □ 충주시 의견 - 편입되는 지역

- 충주시의회 의견 :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하천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, 시군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음.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없고 면적 또한 미미하며 토지소유주도 원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타당함
- 충주시장 종합의견 :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 3,690㎡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시군간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하천제방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, 경지정리사업 종료에 따라 환지청산 및 소유권 이전 등 지구내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

## □ 괴산군 의견 - 편입받는 지역

- 괴산군의회 의견 :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시행한 충주시 살미면의 토지를 괴산군 장연면으로 편입하여 하천제방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 하여 농지관리 및 주민편의 도모
- 괴산군수 종합의견 : 경지정리에 따른 경계지역토지의 편입으로 편입된 토지가 4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동일 필지가 2개 시군에 걸쳐 되는 등 농지관리의 어려움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

## 참 고 자 료

- 행정구역조정 관련법규
- 시군종합의견서(충주.괴산)
- 경계조정대상지 지적도

## 행정구역조정 관련 법규

### ○ 지방자치법

- 제4조 【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】**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 ○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2조 【관련 지방의회】**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서 “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”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

# 종합의견서

대상지역	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⇒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568-14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괴산군 장연지구경지 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 3,690㎡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시·군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
- 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환지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 지구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.

99년 4월 일

충 주 시 장



찬 성 표 시	찬 성	○	반 대	
---------	-----	---	-----	--

# 중 합 의 건 서

대상지역	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 3,690㎡ 천 ⇒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
------	--

- 97년 9월 9일 충청북도의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'97. 10. 16 부터 '98. 5. 30까지 시행한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가 포함되어 경지 정리가 추진되었음
  
- 경지정리결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가 4개 필지로 분할되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이웃 토지에 합병 환지계획에 있으므로 농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충주 시 살미면 문강리 568-14번지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편입 행정구역 경계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999년 4월 3일

괴 산 군 수 김 환



찬 성 표 시 (해당란에○표)	찬	성	○	반	대
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-	---



# 관할구역지적도

축척 1/1,200

